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신당제5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35-03-04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3-11-15
김**	김** 1987-07-18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3-11-15